

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영 주 시

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51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. .
제출자 : 영주시장

1. 제안이유

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재산세에 대한 감면조항을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간결히 정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배기량 2,000㎤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2조제2항제1호)

- 1) 배기량 2,000㎤씨 이하인 승용자동차
- 2)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
- 3)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

나. 재산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문 수정(안 제11조제1항, 제15조, 제16조제2항, 제21조, 제24조제1항)

3. 개정조례안 : 복임과 같음

4. 신·구 대비표 : 복임과 같음

5. 참고자료

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 【도재정과-22445(2005.12.7)】

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
 - 가. 배기량 2,000㎤이하인 승용자동차
 - 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
 - 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)

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 중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”를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 중 “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를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로 한다.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토지 및 지상건축물”을 “토지·지상 건축물·주택”으로 한다.

제21조 중 “화물터미널 및 창고용”을 “창고용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”을 “취득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 · 구 대비 표

【영주시세 감면조례】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유
<p>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배기량 2,000㎤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(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「자동차관 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 된 자동차를 제외한다)</p> <p>2. ~4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① (본문 생략)</p>	<p>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. 배기량 2,000㎤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 동차 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 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 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 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(2005 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 어 온 것은 제외한다)</p> <p>2. 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① (본문 현</p>	<p>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면 제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.</p>
		3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다만, 공동주택을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.</p> <p>1.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 와 제2호의 규정 및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(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속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</p> <p>2.~3. (생략)</p> <p>② (본문생략) 다만, 공동주택을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.</p> <p>1.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「임대주택</p>	<p>행과 같음)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1.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.~3. (현행과 같음) ②(본문 현행과 같음)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1. 「임대주택</p>	개정사항 반영.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(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속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</p>	<p>법」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</p>	
2.~3. (생략)	2.~3. (현행과 같음)	
<p>제15조 (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	<p>〈삭제〉</p>	<p>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 용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.</p>
<p>제16조 (사권체한토지에 대한 감면) ① (생략) 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(그 해당부분에 한한다)에 대</p>	<p>제16조 (사권체한토지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</p>	<p>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토지 · 지상건축물 · 주택으로 조문수정</p>

제 목	내 용	설명
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 제 8 항 제 9 항 제 10 항 제 11 항 제 12 항 제 13 항 제 14 항 제 15 항 제 16 항 제 17 항 제 18 항 제 19 항 제 20 항 제 21 항 제 22 항 제 23 항 제 24 항 제 25 항 제 26 항 제 27 항 제 28 항 제 29 항 제 30 항 제 31 항 제 32 항 제 33 항 제 34 항 제 35 항 제 36 항 제 37 항 제 38 항 제 39 항 제 40 항 제 41 항 제 42 항 제 43 항 제 44 항 제 45 항 제 46 항 제 47 항 제 48 항 제 49 항 제 50 항	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 제 8 항 제 9 항 제 10 항 제 11 항 제 12 항 제 13 항 제 14 항 제 15 항 제 16 항 제 17 항 제 18 항 제 19 항 제 20 항 제 21 항 제 22 항 제 23 항 제 24 항 제 25 항 제 26 항 제 27 항 제 28 항 제 29 항 제 30 항 제 31 항 제 32 항 제 33 항 제 34 항 제 35 항 제 36 항 제 37 항 제 38 항 제 39 항 제 40 항 제 41 항 제 42 항 제 43 항 제 44 항 제 45 항 제 46 항 제 47 항 제 48 항 제 49 항 제 50 항	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 제 8 항 제 9 항 제 10 항 제 11 항 제 12 항 제 13 항 제 14 항 제 15 항 제 16 항 제 17 항 제 18 항 제 19 항 제 20 항 제 21 항 제 22 항 제 23 항 제 24 항 제 25 항 제 26 항 제 27 항 제 28 항 제 29 항 제 30 항 제 31 항 제 32 항 제 33 항 제 34 항 제 35 항 제 36 항 제 37 항 제 38 항 제 39 항 제 40 항 제 41 항 제 42 항 제 43 항 제 44 항 제 45 항 제 46 항 제 47 항 제 48 항 제 49 항 제 50 항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)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 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 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 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 을 추징한다.	
1.~2. (생 략) ② (생 략)	1.~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	